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1. 11.(화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210)	담 당 자	박성수 사무관(044-203-4214) 유상원 사무관(044-203-4203)

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·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
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국회 본회의 통과 -
-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·R&D·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1월 11일(화) **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국회를 통과**했다고 밝혔다.

○ 정부는 '21.5월 관계부처 합동 **「K-반도체 전략」 수립 이후** '반도체 특별법'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, **약 8개월간의 논의**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·보호를 위한 **특별법 제정이 확정**되었다.

□ **정부와 여·야**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**'국가첨단전략산업'의 육성이 시급**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, **특별법 제정을 추진**하였다.

○ 그 결과, **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**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)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**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**하였다.

○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(위원장 : 변재일 의원)에서 당·정이 함께 논의했던 **송영길 의원안**을 중심으로 **유의동·소병철 의원안을 병합***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.

* (소병철의원안, 8.25일 발의) 「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(유의동의원안, 10. 8일 발의) 「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(송영길의원안, 10.22일 발의) 「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□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**'국가첨단전략기술'을 지정**하고 관련 산업인 **'국가첨단전략산업'을 강력히 육성·보호하기 위해 마련**되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**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**한다.

○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**국무총리 산하**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**'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*'를 설치**하고,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**주요 지원정책을 심의·의결**한다.

* 국무총리(위원장), 산업부장관(간사위원)를 포함한 정부위원+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

❷ 투자·기술혁신·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**기업 성장을 뒷받침**한다.

○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**인·허가 신속처리 특례, 기반시설 구축, 민원 처리, 펀드 조성, 세액공제**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.

- 특히, 첨단산업 제조·R&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·허가 지연 시 **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**할 수 있는 **제도를 신설**하고, 특화단지 **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**을 추진한다.

▲(인·허가)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·허가 지연 ⇒ 신속처리 신청(기업→산업부장관) ⇒ 위원회 심의·의결 ⇒ 신속처리 요청(산업부장관→인허가권자) ⇒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
▲(기반시설)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,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
▲(부담금)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
▲(민원)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「화관법」, 「화평법」, 「산안법」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
▲(펀드) 모태펀드를 활용하여(별도계정 신설 등)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
▲(세제)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

○ 또한, **국가첨단전략기술 R&D**는 정부 예산편성 시 **우선 반영**하고, 대규모 사업 추진 시 **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*를 마련**하였다.

▲(대상선정)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
▲(신속처리)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
▲(예타면제) 국가·경제안보, 공급망 안정화,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 가능

○ 아울러,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**계약학과, 특성화대학(원) 설치·운영**을 지원하고, **'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'를 구축**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, 해외 우수 R&D 인력 유치를 위한 **사증 특례*도 지원**한다.

*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

❸ 첨단산업 **성장 활력 제고**를 위해 **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**한다.

○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**연구개발, 생산활동 등**과 관련되는 **규제개선을 신청**하면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**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***하고 **법령 정비가 불필요**한 내용은 **적극적으로 처리**한다.

* 15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 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 가능

○ 만약, 신청내용, 검토·처리결과 등에 대해 **추가 검토, 법령 정비, 특례 부여**(규제샌드박스, 연구개발특구, 규제자유특구 등)가 필요한 경우에는 **위원회 심의**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**조속한 이행을 추진**한다.

○ 이 경우, **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**에 대해 고의·중과실이 없다면 징계·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**면책특례를 적용**한다.

❹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**전략기술·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**한다.

○ **기술 수출·M&A**의 경우 **사전승인 대상은 강화***하면서 **절차는 기존 「산업기술보호법」을 준용**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.

* (산기법) 정부지원을 받은 기술은 승인, 그 외에는 신고, (특별법) 정부지원과 무관히 승인

○ 이 밖에도 **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**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**전문인력을 지정**하고, 기업-전문인력간 **비밀유지,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**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**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**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, **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**된다.

○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**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**할 예정이며,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**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**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
【붙 임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요약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(☎ 044-203-4214), 유상원 사무관(☎ 044-203-42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요약

〈 ❶ 총 칙 〉

□ (**제1조 : 목적**) **국가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, 기술역량 강화**로 지속가능한 **성장기반** 구축 ⇒ **'국가·경제안보 확보' + '국민경제 발전'**

□ (**제2조 : 정의**) **국가첨단전략기술***(이하 "전략기술"), **국가첨단전략산업****(이하 "전략산업"),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*(이하 "특화단지") 등 정의

□ (**제4조 : 다른 법률과의 관계**)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**다른 법을 적용**하는 것이 관련 사업자에게 **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**

○ 다만, **전략기술 보호조치**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**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**을 적용

〈 ❷ 전략산업등의 육성 · 보호 기본계획등 〉

□ (**제5조 : 기본계획의 수립**)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·지속적 육성·보호를 위해 **5년마다 '전략산업등의 육성·보호 기본계획' 수립**

□ (**제6조 : 실행계획의 수립**) 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**은 기본계획에 따라 **매년 '전략산업등의 육성·보호 실행계획' 수립·시행**

□ (**제7조 :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**)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 관련 **경제적·산업적·국제적 현황조사** 및 **발전전망** 예측

□ (**제9조 :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**)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**주요 정책 및 계획**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**국무총리 소속** 위원회 구성

○ 심의·의결 사항 중 **전략기술 지정·변경 및 해제**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·조정하기 위해 **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** 구성

□ (**제10조 : 긴급수급안정화**)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공급망 불안으로 국민경제의 현저한 저해 우려 ⇒ **6개월 내**에서 **긴급수급안정화 조치 가능**

‹ 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›

□ (**제11조 :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**) 산업부장관은 **지정요건*을 종합 고려**하여 전략기술을 **지정·변경 및 해제 후 고시**

* ❶산업 공급망 및 국가·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, ❷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, ❸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, ❹산업적 중요성, ❺수출·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

○ 전략기술 지정·변경 및 해제 시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**국가핵심기술을 지정·변경 및 해제한 것으로 간주**

□ (**제12조 : 수출승인 등**)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기업 등에 **전략기술을 수출**하기 위해서는 **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**

○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수출한 경우 **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가능**

□ (**제13조 : 해외인수·합병 등**)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인수·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**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**

○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인수·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**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가능**

□ (**제14조 : 보호조치 등**) 전략기술보유자는 **전략기술 보호조치***를 해야 하며, 전문인력 지정을 통해 **특정 인력의 이직·재취업 관련 계약 가능**

*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허가 또는 휴대품 검사,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

○ 전문인력의 **동의가 있거나** 전략기술의 **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**되는 경우 **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확인*** **가능**

* 신청(전략기술보유자→산업부장관) → 정보 요청·회신(산업부장관↔법무부장관) → 제공(산업부장관→전략기술보유자)

□ (**제15조 :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**) 부정한 방법, 손해를 가할 목적,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기인하여 **전략기술을 사용·공개**하는 경우 처벌

* 처벌 내용은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대비 강화

〈 ❹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〉

□ (**제16조 : 특화단지 지정**) 전략산업등의 **혁신적 발전** 및 **산업생태계 조성**을 위해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**특화단지 지정**

○ ①전략산업등 **기관·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**, ②전략산업등 **기업이 위치하였거나 이전하려는 지역** 등을 지정*

* 특화단지 지정 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

□ (**제19조 : 인·허가등의 특례**) **인·허가등의 지연**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**현저한 지장 우려** ⇒ 사업시행자가 **산업부장관에게 신속처리 신청**

○ 산업부장관은 **위원회 심의·의결** 후 **인·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 요청** ⇒ 인·허가권자는 **15일 내 처리계획**을 **회신***하고, **회신 後 30일 내 처리****

* 처리 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계획 회신
**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

□ (**제20조 : 특화단지 운영 지원**) 국가·지자체는 **산업기반시설***, **공통 연구개발 인프라** 등의 구축비 **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**

*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

○ 국가·지자체는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**인가·허가·승인 등 행정지원**

□ (**제21조 :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**)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**입주기관 설비투자, 연구시설**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의 **전부 또는 일부 지원**

□ (**제22조 :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**) **특화단지 입주기관**(중소·중견 한정) 및 **사업시행자**에 대해 **각종 부담금*** **감면**

*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

□ (**제23조 : 민원처리 특례**)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「화관법」, 「화평법」, 「산안법」 등의 **민원 신청** ⇒ 해당 **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처리**

*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·결과 통보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·등록면제 확인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

‹ ❺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›

□ (**제24조 :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**)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**연구개발, 인력확보, 지식재산 보호, 해외진출** 등 지원

□ (**제25조 :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**) 정부는 **전략기술 개발사업** 추진* 시 **국가연구개발 예산에 우선 반영**되도록 노력

*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R&D 사업 추진 가능

○ **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**은 특허 등 **지식재산권 조사**도 함께 실시

□ (**제26조 : 기술개발사업 촉진 특례**) 요건*을 충족하는 기술개발사업은 **공모 外 주관기관 지정, 현금부담비율 완화** 등 특례 적용

* ❶국가적으로 중요하고, ❷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, ❸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

□ (**제27조 : 예비타당성조사 특례**) 기재부장관 및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**예타 대상사업 선정, 신속처리, 면제** 등 지원

* ❶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
❷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예타는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
❸국가·경제안보, 공급망 안정,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 필요시 예타 면제

□ (**제29조 : 규제개선의 신청 등**) 전략산업등 기업은 **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, 생산활동** 등과 관련한 **규제개선 신청**(→산업부장관)

* 신청내용 통보(산업부장관→관계기관장) ➡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(관계기관장→산업부장관)

○ 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의 **법령정비, 특례 적용***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**조속히 의결내용 이행**

* ❶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, ❷「정보통신융합법」 제38조의2,
❸「연구개발특구법」 제16조의2, ❹「지역특구법」 제86조 및 관련 조항

□ (**제31조 :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**) 국가·지자체는 전략산업등의 **국제동향 파악, 전문인력 교류, 공동연구 수행** 등 사업의 **시행·지원**

□ (**제32조 : 투자활성화 지원**) 산업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**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하여 지원**(중기부장관과 협의)

□ (**제33조 :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**)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**안전교육과정*을 산업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요청**(→환경부장관)

*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

○ 환경부장관은 전략산업 관련 **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**하여 **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**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□ (**제34조 :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**) 국가·지자체는 **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** 등 관련 세법의 내용에 따라 **조세 감면**

〈 ⑥ 전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〉

□ (**제35조 : 전문인력양성**) 정부는 **원활한 인력수급**을 위해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 등과 **인력양성 및 연구시설·장비·교원 확충 사업 추진**

□ (**제36조 : 계약학과등 지원**) 정부는 **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**하는 산업교육기관 장에게 **산업체 부담금** 및 **학생 등록금 일부**를 지원

○ 「산업발전법」 제12조에 따라 **계약학과등의 설치 수요를 매년 조사**

□ (**제37조 :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**) 정부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** 지정 및 지원

□ (**제38조 :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**) **연구기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기관** 등을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

○ 정부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**현장전문인력 양성, 위탁교육, 국내외 인력 교류·협력** 등의 **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**

□ (**제39조 : 해외 우수인력 발굴·유치 및 특례**) 정부는 **해외 대학·연구기관·기업**의 전략기술 관련 **전문인력에 관한 조사·분석**을 수행

○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기술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**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변경 가능**

〈 ❼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〉

□ (**제40조 : 연대협력 촉진 책무**) 정부는 전략산업 **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기업, 기관 또는 단체간의 **연대협력을 촉진**

○ 특별법에 따른 **지원을 받는 기업은 연대·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**

□ (**제42조 : 연대협력모델의 발굴**) 정부는 **연대협력모델을 발굴·지원**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**연대협력 권고** 및 **연대협력모델 선정** 가능

○ 연대협력모델은 **산업별·기술별 목표, 협력내용, 연구개발·생산·투자계획, 규제개선**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

□ (**제43조 :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**) 국가·지자체는 **연대협력 촉진, 연대협력모델 지원**을 위해 **공동 R&D, 신뢰성평가, 설비확충** 등 지원*

*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 모두 포함

□ (**제44조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특례**) 연대협력모델 중 산업부장관-공정위간 협의사항은 **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*** **未적용**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

〈 부 칙 〉

□ (**제1조 : 시행일**) 이 법은 **공포 후 6개월이 경과**한 날부터 시행

□ (**제2조 : 유효기간**) 이 법은 **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** 발생

□ (**제3조 :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적용례**) **제20조 개정규정**은 이 법 **시행 당시 설치**(증설 포함)가 **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**